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6-1622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노원구청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01-1번지 일원	27,921㎡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성훈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서울도시공간포털

○ 열람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제출

(온라인 제출)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작성

(우편 제출)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도시관리과

(팩스 제출) FAX : 02-2116-4633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구청장은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4), 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시지정1팀(☎02-6400-5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